

제234회 정례회
2004. 12. 20(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4년 11월 11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1일
- 다. 상정일자 : 2004년 12월 15일(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국장 김전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중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고(제8조제2항),
- 교육감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제10조제1항),
-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야 하고(제14조제1항),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함(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지용·옥)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5조(적용범위)”는 본 조례 전체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총칙적 규정에 해당되므로 제1장 총칙에 두되 “도교육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열린다당」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1장 총칙”에 두고 “자유 게시판” 등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일부 오류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주요골자

- 안 제2조제7호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장”으로 함
- 안 제3조제2항제4호 “전자우편 아이디”를 “이용자 아이디”로 함
- 안 제5조(적용범위)에 “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둠
-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설치 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15조로 하고 제4장에 둠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4년 12월 15일

제안자 : 이기동 의원외

□ 제안이유

-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1장 총칙”에 두고 “자유 게시판” 등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일부 오류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주요골자

- 안 제2조제7호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을”으로 함
- 안 제3조제2항제4호 “전자우편 아이디”를 “이용자 아이디”로 함
- 안 제5조(적용범위)에 “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둠
-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설치 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15조로 하고 제4장에 둠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7호중 “담당관·과를”을 “담당관·과장을”으로 한다.

○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자 아이디(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4장에 둔다.

제15조(자유게시판 등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한다.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제 1 장 총 칙</p> <p>제2조(정의) 1.~6.(생략)</p> <p>7.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u>담당관·과</u>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 2 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생략)</p> <p>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4. 전자우편 아이디(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제5장도 같다) 이용</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생략)</p> <p>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교육청 산하기관 및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p>	<p>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제 1 장 총 칙</p> <p>제2조(정의) 1.~6.(제정안과 같음)</p> <p>7.....<u>담당관·과장</u>을.....</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u>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u>로 한다.</p> <p>제 2 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제정안과 같음)</p> <p>②</p> <p>4.이용자 아이디(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p> <p>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제정안	수정안
<p>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학부모 등 주민참여</p>	<p>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학부모 등 주민참여</p>
<p>(신 선)</p>	<p>제15조(자유게시판 등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 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한다.</p>
<p>제 5 장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p>	<p>제 5 장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p>
<p>제15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생략)</p>	<p>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정안과 같음)</p>
<p>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p>	<p>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p>
<p>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생략)</p>	<p>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제정안과 같음)</p>
<p>제 7 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p>	<p>제 7 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p>
<p>제17조(개인정보 보호)(생략)</p>	<p>제18조(개인정보 보호)(제정안과 같음)</p>
<p>제18조(자료의 보안)(생략)</p>	<p>제19조(자료의 보안)(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261호
----------	-------

제출연월일 : 2004년 12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실상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법적 기준 없이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를 법적 기속력이 있는 조례로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안 제3조)
-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공개
- 열린 교육감실 운영
- 전자민원창구 운영
-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
-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안 제7조)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분야별·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불건전한 9개 항목에 대하여는 삭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제2항)
-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 (안 제9조)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안 제10조)
- 인터넷 민원접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안 제11조)
-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개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 인터넷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열린 교육감실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안 제15조)
-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및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함. (안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안 제17조)
- 인터넷 시스템 자료의 보안관리 (안 제18조)

제정 조례안 : 불 임 참 조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2004. 8. 20. ~ 2004. 9. 8.)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장비, 각종 프로그램, 자료, 통신,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상호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홍보, 주민편의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의 인터넷 시스템 접속권한·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제 2 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교육감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교육청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열린 교육감실 운영으로 학부모 등 주민의 참여 유도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이용자 아이디(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
5. 학부모 등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교육감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개발)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업무 개발 또는 자료등록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공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과의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으로 게시가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기타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운영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9조(자료의 제공) 교육감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접수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사무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 민원접수) ① 인터넷 민원은 그 종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제1항의 처리비용을 교육감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공개) ① 교육감은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교육감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원상담을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학부모 등 주민참여

제14조(열린 교육감실 운영) ①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열린 교육감실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제15조(자유게시판 등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한다.

제 5 장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교육감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국외에 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 7 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 보호) ① 교육감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보안)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전자적 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방문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8조 (민원사항 등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